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방안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승민 분석관

논의의 배경

- 정부·지자체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 중으로, 장애인의 경우 78만 여 명이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2023년 기준)
 -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를 말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정부·지자체는 보조기기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필요한 자원 조달 등에 노력할 책무가 있음(장애인보조기기법 제4조)
- 다만,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 분절화된 운영 문제, 서비스 제공 부족 문제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사용 현황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을 살펴 보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보조기기 사용실태

-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 시 정부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자는 증가 추세*지만, 대상자의 47.0%는 여전히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입 중
 - * 지원받은 경험: '14년 39.7%(전체 51.2만명 추정) → '23년 53.0%(전체 78.0만명 추정)
- 서비스 제공 형태로는 구매비용 지원은 증가, 임대는 감소 추세
 - * 구매 지원 비중(임대 비중): '14년 92.9%(7.1%) → '23년 95.1%(4.9%)

[표 1]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 형태

(단위: 만명)

연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자 수(추정)		128.9	129.5	108.7	147.2
외부 지원받은 자의 수(비중, %)		51.2(39.7%)	47.7(36.8%)	47.0(43.2%)	78.0(53.0%)
지원 형태 (%)	- 구매비용 지원	92.9	95.1	96.2	95.1
	(전액)	(35.5)	(28.3)	(26.0)	(19.4)
	(일부)	(57.4)	(66.8)	(70.2)	(75.7)
	- 유·무상 임대 등	7.1	4.9	3.8	4.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 장애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의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나,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 예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139.4만명)의 경우 10.7%가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8.3%만 사용하고 있음

[표 2]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사용 실태(2023년)

(단위: %)

장애유형	보조기기 종류	필요성 여부 ¹⁾	소지 여부 ¹⁾	사용 여부 ¹⁾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9.4만명)	지팡이	23.4	25.1	19.9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10.7	9.8	8.3
	수동휠체어	8.6	7.6	6.6
	척추보조기	4.8	5.0	2.7
	전동휠체어	4.5	2.6	2.2
시각장애 (24.8만명)	안경(콘택트렌즈)	56.4	56.4	52.1
	확대경/독서확대기	14.3	10.7	9.3
	의안	11.2	10.7	10.7
청각장애 (43.3만명)	보청기	18.0	16.8	15.3
	자막수신기	3.7	2.3	2.1
	인공 와우	3.4	2.9	2.8
지적·자폐성장애 (27.3만명)	터치모니터	4.1	0.5	0.4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3.8	0.3	0.2
호흡기장애 (1.1만명)	산소발생기	49.3	43.0	42.1
	호흡근육훈련기	23.3	13.3	12.4
	인공호흡기	14.5	12.4	11.4
장루·요루장애 (1.7만명)	장루주머니	86.8	86.8	86.8
	피부보호판	85.1	84.3	83.9

주 1) 해당 등록장애인 중 각각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실제 보조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사람의 비율

1. 괄호 안은 2023년말 기준 등록 장애인의 수(복지정보통계시스템 상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3.11.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며 (2023년 기준), 근거 법령이나 대상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됨

-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716만건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13만건 지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가입자 대상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3만건 지원) 등

- 전체 지급실적은 738만여 건, 지급액은 4,932억원

[표 3]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2023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부처	사업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기기용어	지급실적	지급액	대상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복지용구	7,155,117	337,933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 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134,079	93,195	건강보험 가입자
		지자체	의료급여법	장애인 보조기기	31,415	20,17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법	장애인 보조기기	3,983	2,091	장애인 (기초·차상위)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¹⁾	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장애인 보조기기	2,622(명)	2,567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위: 건, 백만원)

부처	사업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기기용어	지급실적	지급액	대상
고용부	재활보조기기 지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재활보조기기	32,682	8,097	산재보험가입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법	장애인보조공학기기	8,139	15,391	장애인고용사업주
보훈부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보훈관서	국가유공자법	보철구	6,468	5,743	국가유공상이자
교육부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지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법	보조공학기기	4,197	미확인 ²⁾	특수교육대상자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보조기기	6,603	7,883	등록장애인
중기부	1인사업주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법	보조공학기기	45	138	장애인1인사업주
계					7,382,728건 2,622명	493,212	-

주: 1) 지체·뇌병변·척수장애 아동 등 대상 바우처 지원

2)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렌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지급액의 산출 곤란

자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에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두고 있고,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 중

- 중앙센터: 보조기기 정책지원,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원, 보조기기 종합정보제공 DB 운영, 보조기기 품질관리 실무자 협의체 운영 등 수행(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
- 지역센터: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보조기기 맞춤형 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수행(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 (부처 간 분절적 운영 개선) 현재 공적급여 보조기기 사업은 각 부처의 고유한 목적과 제도로 인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처별 보조기기 품목분류, 품질·관리기준, 법령이나 행정절차 등이 상이한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보조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생산자가 보조기기를 개발해도 상품의 상용화(판매)가 어려운 이유에는 '정부의 품질 인증을 받기 어려움(절차, 비용)' 16.1%, '공적 급여 진입의 어려움' 3.2% 등이 있음¹⁾
- 또한 장애인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각 부처별 지원 품목의 명칭이나 지원체계가 서로 달라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²⁾

▪ (지역사회와의 연계)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조기기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있고,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이에 포함됨
 - * 지원 품목 확대('23년 38개 → '27년 46개),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보조기기센터 확충(분소 설치) 등 추진
- 다만,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간의 연계 부족 등 지역의 보조기기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바³⁾, 지속적인 연계 노력 필요

1) 보건복지부, "2023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2023.10.

2)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2023년 보조기기 백서", 2023.12.

3)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위 자료.

사업 내용
개선방안

- (정보제공)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 각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상담,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각 지역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정부 부처, 지원 방법 등을 안내 중이나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사업이 중심이 됨
 - 보조기기센터의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센터 확충 필요(현재 17개소)

- (구매 외 대여 등 선택권 확대)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경감과 다양한 보조기기 경험 제공,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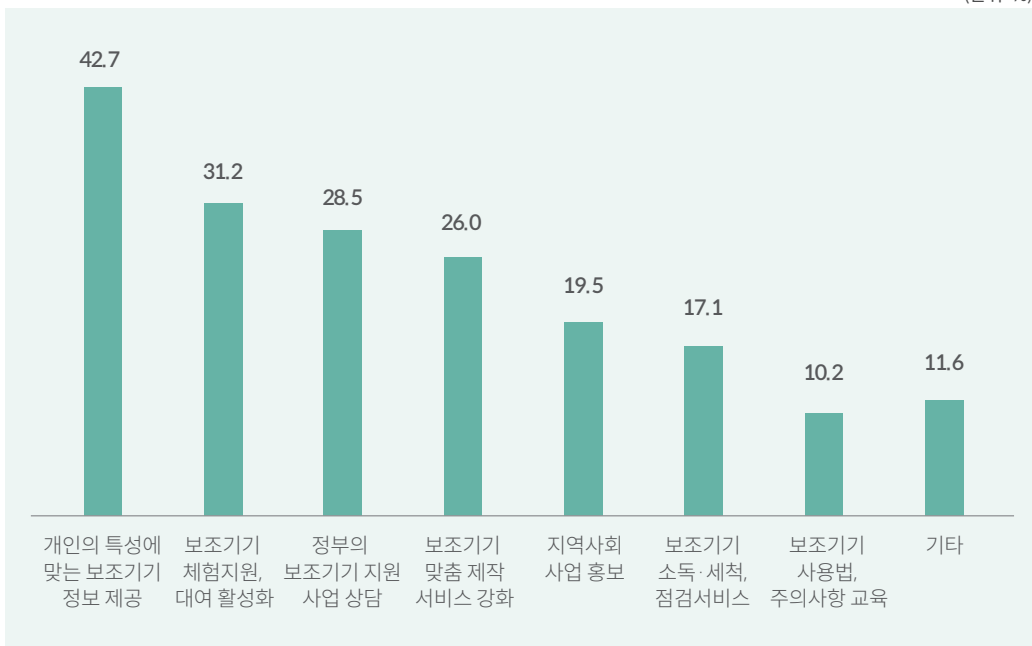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신청 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보조기기 대여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를 통해 만 24세 이하의 신체 및 뇌병변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중

- (맞춤 제작, 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조기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요자 맞춤 제작 및 보조기기 사후관리, 홍보·교육 등 필요

 - 보조기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보조기기 맞춤 제작(3D 프린팅 활용 등), 사후 관리(소독·세척, 점검, 수리) 등 수요자 맞춤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 수리 사업: 기초 지자체 125개 자체 실시, 예산 총 79억원, 1인당 15~50만원 지원(2023년 기준)
 - 그밖에 지역사회 보조기기 사업 홍보, 보조기기 사용법·주의사항 교육 강화 등 필요

[그림 1]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보완·강화해야 할 서비스(2024년 만족도 조사)

(단위: %)



주: 지역보조기기센터 이용자(총 1,645명)를 대상으로 실시(조사기간: 2023.1.18.~2.7.), 복수응답 포함
 자료: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보고서”, 2024.3.를 바탕으로 재구성